

(특)

医療保險法

制定 1963年 12月 16日 法律第1623號
改正 1970年 8月 7日 法律第2228號
改正 1976年 12月 22日 法律第2942號

(집)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國民의 疾病, 負傷, 分娩 또는 死亡등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의 增進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管掌) 이 法에 의한 醫療保險事業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3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業事主 또는 事業經營生를 말한다.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
4. “報酬”라 함은 勤勞者가 勤勞의 對價로서 賃金,俸給, 手當 기타 어떠한 名目으로든지 支給받는一切의 金品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5. “被扶養者”라 함은 被保險者の 配偶者, 直系尊屬 및 直系卑屬으로서 主로 그 被保險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者를 말한다.

第4條(醫療保險審議委員會) ①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醫療保險事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醫療保險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委員會는 勤勞者 使用者 및 醫藥界를 代表하는 각 同數의 委員과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으로組織한다.

③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該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被保險者

第5條(被保險對象) 國내에 居住하는 國民은 醫療保險의 被保險對象이 된다. 다만,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教員 年金法의 該當者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醫療保險에 加入된 者 및 生活保護法에 의한 보호를 받는 者와 그 世帶에 속하는 者는 제외한다.

第6條(被保險者的 種類) ① 醫療保險의 被保險者は 第1種 被保險者와 第2種被保險者로 区分한다.

② 第1種被保險자는 第7條 및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

의 劍勞者가 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제외한다.

③第2種被保險者는 地域住民등 第1種被保險者外의 者가 된다.

第7條(當然適用被保險者) 事業의 種類, 劍勞者の 數 등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劍勞者は 당연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被保險者(이하 “當然適用被保險者”라 한다)가 된다.

第8條(任意適用被保險者) ①第18條 第1項의 認可가 있은 때에는 그 事業場의 劍勞者は 모두 第1種被保險者가 된다.

②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가 있은 때에는 그 管轄地域내에 居住하는 者로서 醫療保險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는 第2種被保險者가 된다.

第9條(資格取得의 時期) ①第1種被保險者は 그가 사용되고 있는 事業場에 第17條 또는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이 設立된 날 또는 그 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事業場에 사용된 날에 그 資格을 取得한다.

②第2種被保險者は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加入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取得한다.

第10條(資格喪失의 時期) ①第1種被保險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資格을 衰失한다.

1. 死亡한 때

2. 國籍을 衰失한 때

3. 使用關係가 終了된 때

4. 第6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5.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認可가 있은 때

②第2種被保險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資格을 衰失한다.

1. 死亡한 때

2. 國籍을 衰失한 때

3. 組合의 管轄地域에서 退去한 때

4. 第1種被保險者が 된 때

5.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認可가 있은 때

6. 組合에서 脫退한 때

第11條(資格得失의 확인) ①被保險者の 資格의 取得 및 衰失은 保險者の 確認에 의하여 効力を 발생한다.

②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第12條(標準報酬) ①第1種被保險者の 保險料의 計算是 被保險者の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하여 等級別 标準報酬月額으로 算定한다.

②第1項의 等級別 标準報酬月額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保 險 者

第13條(保險者) ①醫療保險의 保險者는 組合으로 하여 第1種組合과 第2種組合으로 區分한다..

②組合은 그組合員인被保險者の保險을管理,運營한다.

第14條(組合와 組織) ①第1種組合은使用者와 그事業場에 사용되는第1種被保險者를組合員으로하여組織한다.

②第2種組合은組合管轄地域내에居住하는者로서그組合에加入한第2種被保險者를組合員으로하여organization한다.

③第1項의規定에의한第1種組合은2이상의事業場이共同으로하나의組合을organization할수있다.

第15條(組合의 法人格)組合은法人으로한다.

第16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이法에의한組合이아니면醫療保險組合또는이와類似한名稱을사용할수없다.

第17條(組合의 當然設立)第7條의規定에의한當然適用被保險者를사용하는事業場의使用者는大統領令으로정하는期間내에定款을作成하여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組合을設立하여야한다.

第18條(第1種組合의 任意設立)①第7條의規定에의한事業場이외의事業場의使用者는定款을作成하여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組合을設立할수있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認可를받고자할때에는被保險者が원者의3분의2이상의同意(2이상의事業場이共同으로組合을設立하고자할경우에는각事業場별로한다)를얻어야한다.

③第1項의認可를받아設立된組合의被保險者를사용하는事業場의使用者는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그組合을解散할수있다.이경우에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19條(第2種組合의 任意設立)①第2種組合을設立하고자할때에는第2種被保險者로원者30人이상의發起人이定款을作成하여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다만,醫療法의規定에의한醫療機關의開設者가第2種組合을設立하고자할때에는30人이상의發起人은必要로하지아니한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組合의設立認可에있어서그組合이管轄하는地域및規模等에관하여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한다.

③第1項의規定에의하여設立認可를받은組合이解散하고자할때에는組合員3분의2이상의同意를얻어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20條(第1種組合의 設立命令)①保健社會部長官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第7條의規定에의한當然適用被保險者를사용하는2이상의事業場의使用者에게共同으로하나의第1種組合을設立할것을命할수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미設立된2이상의第1種組合에대하여共同으로하나의組合을設立할것을命할수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第7條의規定에의한當然適用被保險者를사용하는事業場의使用者및이미設立된第1種組合에대하여共同으로하나의組合을設立할것을命할수있다.

④保健社會部長官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第7條의規定에의한

當然適用被保險者를 이미 '設立된 第1種組合에' 編入할 것을 그 事業場의 使用者 및 組合에 대하여 命할 수 있다.

第21條(擬制適用)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事業場이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組合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으로 본다.

第22條(組合의 成立) 組合은 設立의 認可를 받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3條(組合定款의 變更) ①組合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그로 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項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內容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組合의 解散命令等) 保健社會部長官은 組合의 決議 또는 任員의 行爲가 法令 또는 定款이나 保健社會部長官이 이 法에 의한 處分에 違反하여 組合員의 利益을 害하거나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組合의 事業이나 財產의 狀況을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거나 任員의 解任 또는 組合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第25條(組合의 組織등) 組合의 組織과 그 管理運營 기타 組合의 解散, 合併等에 관하여 須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醫療施設, 福祉施設) ①組合은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の '疾病도는 負傷의 澄養과 健康의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須要한 預防事業과 醫療施設 및 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組合은 事業에 支障이 없는 범위내에서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が 아닌 者에 대하여 第1項의 施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利用者에 대하여 利用料를 받을 수 있다.

③ 保健社會部長官은 須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第1項의 醫療施設 또는 福祉施設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第27條(醫療保險組合聯合會) ①組合의 醫療保險事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은 須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中央醫療保險組合聯合會(이하 "組合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것을 命하거나 또는 組合聯合會에 加入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聯合會는 組合의 保險財政의 危險을 보장하기 위한 須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の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醫療施設 또는 福祉施設을 設立, 運營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組合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負擔金을 組合으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④ 組合聯合會에 대하여는 第15條, 第16條, 第22條내지 第26條 및 第7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組合聯合會"로 한다.

第28條(準用規定) 組合 및 組合聯合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

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準用한다.

第4章 保 險 給 與

第29條(療養給與) ①被保險者 및 被扶養者の 疾病 또는 負傷에 對하여는 다음各號의 療養給與를 한다.

1. 診 察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3. 處置, 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의 收容
5. 看 護
6. 移 送

②第1項第1號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는 不得已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各號의 醫療機關 또는 藥局(이하 “療養取扱機關”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1. 保険者が 指定한 保健醫療機關 또는 藥局
2. 保険者が 設置, 運營하는 醫療機關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基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한다.

第30條(療養給與期間) 療養給與의 期間은 療養給與가 開始된 날로부터 6月이내로 한다.

第31條(分娩給與)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の 配偶者が 療養取扱機關에서 分娩하는 때에는 分娩給與를 한다.

②第2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2條(療養取扱機關의 指定) 第29條第2項第1號의 療養取扱機關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険者が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指定한다. 指定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3條(療養取扱機關指定의 取消命令) 保健社會部長官은 療養取扱機關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療養取扱機關의 指定을 取消할 것을 保険者에게 命할 수 있다.

1.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나 分娩給與의 費用의 請求에 있어 不正이 있을 때
2.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虛偽報告를 하거나 關係公務員의 檢查 또는 質問을 抵否 방해 또는 躲避한 때

第34條(費用의 一部 負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나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本人이 負擔한다.

第35條(療養의 費用등) 保險者は 療養取扱機關으로부터 療養給與나 分娩給與에 관한 費用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 算定基準에 의하여 審査를 한 후 이를 支給한다.

第36條(療養費) 保險者は 被保險者나 被扶養者が 緊急 기타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取扱機關이외의 醫療機關이나 藥局등에서 療養을 받은 때에는 療養給與에 상당하는 額을

療養費로서 支給한다.

第37條(分娩費) 保険자는 被保險 또는 被保險者の 配偶者가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取扱機關이의 場所에서 分娩한 때에는
分娩始與에 상당하는 額을 分娩費로서 支給한다.

第38條(資格喪失後의 繼續療養給與) ① 療養給與를 받고 있는 者가 被
保險者の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그 疾病 또는 貨傷에 대하여 第30條
에 規定한 期間이 終了될 때까지 계속하여 療養의 給與를 받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被保險者の 資格
을 喪失한 날의 前日까지 계속하여 1年이상 被保險者이었던 者이어야
한다.

第39條(資格喪失後의 分娩給與) ①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被保險者の 資
格을 喪失한 後 3月 以內에 分娩한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分
娩給與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分娩費를 증전의 保険者로부터 받
을 수 있다.

② 第3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0條(附加給與) 保険자는 이 法에 規定한 保険給與 이외에 大統領令
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定款으로 정하여 葬祭費 기타의 給與를 할 수
있다.

第41條(給與의 制限) ① 保険給與를 받을 者가 자신의 故意의 犯罪行
爲에 因基因하거나 또는 故意로 事故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保険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② 保険者는 保険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정당한 理由 없이 療養取扱
機關의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保険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保険者는 保険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정당한 理由 없이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文書 기타 物件의 제출을 拒否하거나 質問 또는 診斷을
忌避한 때에는 保険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保険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로부터 療養費를 支給받거나 療養을 받은 때에는 그 限度내
에서 保険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⑤ 事業上 災害로 인하여 다른 法令에 의한 保険給與나 補償을 받게 된
者는 이 法에 의한 保険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第42條(給與의 중지등) 保険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된 때에는 그 期間中 保険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1. 國外에 旅行中인 때. 또는 國外에서 事業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現役으로 事에 服務中 일 때
3. 縱道所 기타 이에 準하는 施設에 收容되어 있을 때

第43條(強制診斷等) 保険者는 保険給與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정한 때에는 保険給與를 받는 者에 대하여 文書 기타 物件의 제출을 要
求하거나 關係人으로 하여금 質問 또는 診斷을 하게 할 수 있다.

第44條(療養費의 支給) 保険者는 療養費, 分娩費, 또는 附加給與의 請
求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5條(不當利得의 徵收) ① 保険者는 詐欺 기타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보험給與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給與에 상당한 金額의 全部 또는一部를 徵收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使用者の 虛偽의 報告나 證明에 의하여 또는 療養取扱機關의 虚偽의 診斷書에 의하여 保險給與가 행하여 진때에는 保險者는 그 使用者 또는 療養取扱機關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第1項의 徵收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

第46條 (第3者에 대한 求償權) ① 保險者는 第3者的 行爲에 의한 保險給與事由의 발생으로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에 要한 費用의 限度內에서 당해 保險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權利를 取得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第3者로 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保險者는 그 賠償額의 限度內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第47條(受給權의 保護)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第5章 財務

第48條 (國庫負擔) 國庫는 每年度 豐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 및 組合聯合會에 대하여 醫療保險事業의 運營에 필요한 費用의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第49條(保險料) ① 保險者는 醫療保險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중당하기 위하여 組合員으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 第1種組合의 保險料額은 各月에 대하여 被保險者の 標準報酬 月額에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率을 乘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③ 第2種組合의 保險料額은 被保險者와 被扶養者의 數를 基準으로組合定款에서 정하는 額으로 한다.

第50條(保險料率) ① 第1種組合의 保險料率은 1,000분의 30까지 1,000분의 80의 범위내에서組合定款으로 정한다.

② 國外에서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被保險者에 대한 第1種組合의 保險料率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組合定款으로 정한 保險料率 이하로 한다.

第51條(保險料의 負擔) ① 第1種被保險者와 第1種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使用者は 각각 保險料額의 2분의 1을 負擔한다.

② 第2種被保險자는 保險料額의 全額을 本人이 負擔한다.

第52條(保險料의 免除) 被保險者が 第42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될 때에는 保險料를 免除한다.

第53條(保險料의 納付義務) 保險料는 每月 納付하되 第1種被保險者の 保險料는 使用者が 納付하여야 하며 第2種被保險者の 保險料는 本人이 納付하여야 한다.

② 使用者は 第1種被保險者が 負擔하여야 할 當月分의 保險料額을 그 報酬로부터 控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控除額을 被保險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4條(保險料·納付期限) 每月의 保險料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納付

하여야 한다.

第55條(保險料의 督促) ①保險者는 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督促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할 때에는 10日이상의 納付期間을 정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第56條(保險料의 徵收優先順位) 保險料의 徵收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 다음으로 한다.

第6章 審查請求

第57條(審查請求) ①被保險者와 資格, 保險料 또는 保險給與에 관한 處分에 不服이 있은 者는 醫療保險審查委員會(이하 “審查委員會”라 한다)에 審查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請求는 處分이 있는 날로 부터 60日 이내에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事由에 의하여 이 期間內에 審查請求를 할 수 없었음을 謎明하였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第58條(審查委員會의 設置) 審查委員會는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에 둔다.

第59條(審查委員會의 構成等) ①審查委員會는 被保險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각 3人과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4人으로 構成한다.

②第1項의 委員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委嘱 또는 任命한다.

第60條(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公務員으로서 公益代表委員이 된 경우에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61條(委員長) ①審查委員會에 委員長을 두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②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公益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62條(議事) ①審查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審查委員會의 會議는 被保險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각 1人 이상을 포함한 在籍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赞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63條(審查委員會의 權限) 審查委員會는 審查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查請求人 또는 關係人에 대하여 필요한 痘類의 計출, 의경의 陳述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專門家에게 診斷이나 檢察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第64條(審查의 決定) ①審查의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한다.

②審查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은 審查請求人에게 決定書(勝本이) 送達된 때로부터 그 効力가 발생한다.

第65條(審查請求의 節次 등) 審查委員會의 運營 및 審查請求의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6條(訴訟과의 관계) 被保險者の 資格, 保險料 또는 保險給與에 관한 處分에 대한 不服의 訴는 審查請求에 의한 審查委員會의 決定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審查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3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章 捕 則

第67條(時効) ①保険料를 徵收하거나 返還을 받을 權利 또는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②保険料의 督促은 民法 第174條의 規定에 볼고하고 時效中斷의 効力を 갖는다.

第68條(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期間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9條(勤勞者の 權益保護) 第 7 條 및 第 8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場의 使用者는 勤勞者が 이 法에 의한 被保險者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負擔하는 負擔金의 增加를 忌避할目的으로 정당한 事由 없이 勤勞者の 异常 또는 貸金引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解雇 기타 不利益한 措置를 할 수 없다.

第70條(申告등) 保險者は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種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使用者로 하여금 被保險者の 移動, 報酬 기타 醫療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報告와 檢査) ①保健社會部長官은 使用者에게 被保險者の 移動, 報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療養取扱機關(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診療 또는 藥劑의 支給等 保險給與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 保險給與를 받는者에게 당해 保險給與의 內容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④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72條(組合에 대한 監督) 保健社會部長官은 組合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事業 또는 財產狀況을 檢査하여 定款의 變更을 命하는 등 監督上 필요한 措置를 행할 수 있다.

第73條(權限의 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4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章 罰 則

第75條(罰則) 第69條의 規定에違反한 使用者は 1年 이하의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정당한 理由없이 第20條第 2項 내지 第 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26條第 3項(第27條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정당한 理由없이 第63條 또는 7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의 提出, 의견의 陳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虛偽의 陳述을 하거나 檢查를 防害 또는 忌避한 者.

第77條(罰則) 第16條(第27條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8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관하여 第76條 또는 第7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에 處한다.

第79條(過怠料) ① 정당한 理由없이 第17條 또는 第20條第 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所定의 期間內에 設立의 認可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遷延된 期間의 被保險對象者報酬總額의 1,000분의 60에 해당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料를 指定한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納付하여야 할 保險料額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80條(過怠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第27條 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7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72條(第27條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抵否, 防害 또는 忌避한 者.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 ② (被傭者組合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被傭者組合은 이 法에 의한 第1種組合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내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이 法에 의한 定款變更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 ③ (自營者組合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自營者組合은 이 法에 의한 第2種組合으로 본다.
- ④ (適用의例外) 附則第 3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2種組合으로 되는 종전의 自營者組合에 대하여는 그 組合區域내에 새로 이 法에 의한 第2種組合이 設立될 때까지 第36條 第38條 및 第3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여 分娩給與 및 分娩費에 관하여는 第31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邑海 조합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